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현기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34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 : 2017년 7월 18일

발 의 자 : 김현기, 남창진, 김제리, 이순자,
김용석(서초), 박호근, 박중화,
우미경, 신건택, 문영민, 최호정,
김용석(도봉)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효율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시정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공갈등 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함(안 제18조 제1항).
- 나.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,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함(안 제18조 제2항).
- 다. 공공갈등의 예방, 진단, 조정 및 교육·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을 신설함(안 제19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)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·평가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(시가 투자·출연한 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 민원 발생시 : 즉시
2.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: 매 분기 말일
3.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: 수시

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제20조와 제21조로 하고,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자치구 협력 등) 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, 진단, 조정 및 교육·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|--|
| <p>제18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)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·평가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| <p>제18조(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)</p> <p>① 실태 등을 점검·평가해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(시가 투자·출연한 기관,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1.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: 즉시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2.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: 매분기 말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3.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: 수시</p> |
| (신 설) | <p>제19조(자치구 협력 등)</p> <p>시장은 공공갈등의 예방, 진단,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|
| <p>제19조(수당지급 등)</p> <p>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또는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는 운영과정 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5조의 전문가, 전문 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| <p>제20조(수당지급 등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20조(시행규칙)</p> <p>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21조(시행규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p> |

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(자치구 협력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총비용(합계) ≙ 2,110,5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,110,500천원으로 연평균 422,100천원 비용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1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공공갈등 자치구 협력 사업은 서울시 유사사례 준용
 - ※ 공공갈등 진단·활동과 명사초청 갈등특강은 반기별(연2회),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은 월1회(연12회)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- 공공갈등 자치구 협력 사업은 추계기간 중(2018년~2022년) 1차년도(2018년)는 5개 자치구를 시범적으로 지원하며, 2차년도(2019년)부터는 25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함
- 물가 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 ≙ 2,110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| 1차년도 (2018년) | 2차년도 (2019년) | 3차년도 (2020년) | 4차년도 (2021년) | 5차년도 (2022년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 입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(a)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 출 | 공공갈등 자치구 협력사업 (제19조) | 100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2,110,500 |
| | 소계(b) | 100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2,110,50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100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502,500 | 2,110,500 |

- 세부 산출내역

| 사업명 | 세부 산출내역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갈등 자치구 협력사업 | 합 계 | = 20,100천원 |
| | ○공공갈등 진단계획 | = 2,000천원 |
| | - 사전 검토수당 | 50,000원×5명×2회 = 500천원 |
| | - 참석수당(회의) | 150,000원×5명×2회 = 1,500천원 |
| | ○공공갈등 진단활동 | = 6,900천원 |
| | - 전문가 현장조정 활동수당 | 130,000원×3명×5건×2회 = 3,900천원 |
| | - 참석수당(회의) | 100,000원×3명×5건×2회 = 3,000천원 |
| | ○공공갈등 교육·훈련 | = 11,200천원 |
| | - 명사초청 갈등 특강 | 350,000원×10명×2회 = 7,000천원 |
| | -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| 350,000원×12회 = 4,200천원 |

※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(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 및 갈등관리 역량강화 사업) 준용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황 훈

분석관(주무관) 박수진

☎ 02-3705-1286

e-mail : park1002@seoul.go.kr

[참고자료]

2017년도 예산

(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)

1. 세부 사업명 :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조정

○ 예산(안)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| 과목구분 | 세부 산출내역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사무관리비 | ○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컨설팅 | = | 18,900천원 |
| | - 사전 검토수당 | = | 4,500천원 |
| | 50,000원*5명*18회 | | |
| | - 참석수당 | = | 13,500천원 |
| | 150,000원*5명*18회 | | |
| | - 운영경비 | = | 900천원 |
| | 900천원*1식 | | |
| | ○ 갈등조정 전문가 현장활동 지원 | = | 82,850천원 |
| | - 조정활동수당 | = | 39,000천원 |
| | 130,000원*3명*10건*10회 | | |
| | - 참석수당 | = | 9,000천원 |
| | 100,000원*3명*10건*3회 | | |
| | - 운영경비(1식) | = | 4,550천원 |
| | 4,550천원*1식 | | |
| | - 전문가갈등관리실태평가지원 | = | 30,300천원 |
| ▶ 참석수당 | | | |
| 150천원*10명*15회 | | 22,500천원 | |
| ▶ 인쇄비 | | | |
| 8천원*50*2회 | | 3,000천원 | |
| ▶ 운영경비 | | | |
| 5,000천원*1식 | | 5,000천원 | |
| ▶ 서면검토수당 | | | |
| 50천원*10명*4회 | | 2,000천원 | |
| ○ 갈등관리 백서발간 | = | 16,050천원 | |
| - 인쇄비 | = | 3,000천원 | |
| 3천원*1,000부 | | | |
| - 편집기획비 | = | 13,050천원 | |
| 13,050천원*1식 | | | |
| 시책추진업무추진비 | ○ 갈등진단 및 조정 시책업무추진비 | = | 10,000천원 |

2. 세부 사업명 : 갈등관리 역량강화

○ 예산(안)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| 과목구분 | 세부 산출내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사무관리비 | ○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등 | = | 19,800천원 |
| | - 강사료 350,000원*40명 | = | 14,000천원 |
| | - 교재료 4,000원*1,000부 | = | 4,000천원 |
| | - 다과소모품비 3,000원*600명 | = | 1,800천원 |
| | ○ 갈등관리 워크숍 | = | 10,340천원 |
| | - 플래카드 100,000원*2회 | = | 200천원 |
| | - 원고료 130,000원*6명 | = | 780천원 |
| | - 강사료 300,000원*6명*2회 | = | 3,600천원 |
| | - 소규모그룹별지도 150,000원*8명*2회 | = | 2,400천원 |
| | - 인쇄비 4,000원*60명*2회 | = | 480천원 |
| | - 급량비 7,000원*60명*2식*2회 | = | 1,680천원 |
| | - 다과소모품비 10,000원*60명*2회 | = | 1,200천원 |
| | ○ 갈등관리 교육 영상제작 | = | 42,000천원 |
| | - 인건비 유인물비 회의비 인쇄비 등 | = | 42,000천원 |
| | ○ 갈등해결 우수사례 발표회 | = | 8,419천원 |
| | - 중식비 7,000원*140명 | = | 980천원 |
| | - 심사수당 150,000원*4회 | = | 600천원 |
| | - 강사료 350,000원*4회 | = | 1,400천원 |
| | - 다과비 3,000원*140명 | = | 420천원 |
| | - 상패 등 준비물품 일체 | = | 2,019천원 |
| - 인쇄비 5,000원*2회*300부 | = | 3,000천원 | |